

본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해당 부처·기관·사업장 등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 4판 -

2020. 2. 11.

본 지침은 감염병 발생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

4.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증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 보건소 도착 전,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 착용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시·도(보건소)지시 사항에 따라 수행
 - * 즉시 진료를 받도록 이송하거나, 보건소로 내소토록 함
- 이송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목 차



I.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개요	1
1. 법적 근거	1
2. 임상적 특성	1
3. 진단	1
4. 치료	1
5. 예방	2
II. 대응 방안	3
1. 목적	3
2. 기본방향	3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4
가.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4
나.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5
다. 사업장 내 의사환자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	7
라.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사업계획 수립	8
4. 추가 안내 사항	9
가. 휴가 및 휴업 관리	9
나. 특수·배치전전강진단 실시 주기 유예	10
<참고·붙임 목록>	
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보건당국의 조치사항	11
부록1)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14
부록2)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15
부록3) 휴가 및 휴업 관리 관련 참고 법령	16
붙임1) 감염병 예방 수칙	17
붙임2) 카드 뉴스	19
붙임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포스터	23
붙임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Q & A	24
붙임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	49

□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 버스·철도·지하철·택시 등은 개찰구·손잡이·화장실 등 소독 철저 및 종사자에게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
 - 특히, 밀집도가 높은 장소와 고위험군* 사용 공간에 대한 청결을 강화하도록 함
- *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군(당뇨, 만성폐질환, 암, 신부전 및 면역기능 저하자)
- 시설 내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하고, 이용객 중 희망자에게 마스크 배포
 - 의심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시설 내 격리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3. 돌봄 종사자

- 요양보호사·간병인·가사도우미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경우도 중국에서 입국한 경우는 14일 경과 후 서비스 제공으로 관리 철저

II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조치사항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시설 관리자와 유관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 간 비상 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
 - * 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
- 시설 조직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증상 신고접수 담당자'를 지정하여 시설 이용객 및 기타 방문객 중 증상자의 신고 접수
- 시설 종사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질병정보 및 감염 예방수칙, 행동요령 교육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중국을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는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 또는 이용(등원) 중단**

* (예시) 2월 6일 15:00 입국자는 2월 20일(D+14)까지 업무 배제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은 결석시 출석 인정, 격리 아동 임시보육 등

- 업무 배제된 자는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

- 사업장 내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간 휴가나 재택근무를 부여하거나, 휴업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권고

- 시설이용자, 시설종사자 및 기타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홍보

- 직원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붙임 1~3]

-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I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개요

1 법적 근거

-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보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2 임상적 특성

- 주 증상으로는 발열(37.5℃ 이상)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 잠복기: 현재 정확한 잠복기 보고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을 준용하여 최대 잠복기 14일로 적용하여 관리

3 진단

- 실시간 유전자 검출 검사(Real-time RT-PCR)으로 진단 가능

4 치료

- 현재까지 치료를 위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있지 않으며 치료는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 실시

5 예방

○ 감염병 예방 행동 수칙

-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 비누가 없으면 알코올 손 세정제를 사용
- 기침, 재채기 시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시 해외 여행력 알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기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피하기

○ 중국지역 출장(체류) 시 예방수칙 준수

-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
 - * 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 등
-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하기
-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관할 보건소, 지역 120 콜센터, 1339콜센터 상담
- 출장 중 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발열, 호흡기 증상자(기침, 인후통 등) 접촉하지 않기

I 목적 및 기본방향

1. 목 적

- ☐ 2020년 1월 20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첫 확진환자가 보고된 후,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관리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버스·철도·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쇼핑센터(대형마트·시장·면세점·백화점 등),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등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증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 ☐ 본 지침에서는 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의 역할** 등을 제시함

2. 기본방향

- ☐ 다수인이 집합하거나 이용하는 각종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 체계” 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을 위해 시설이용자, 시설 종사자, 기타 방문객을 위한 **위생관리 철저 및 관련 인프라 지원**
- ☐ 시설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의심환자 포함)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추가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

I. 목적 및 기본방향

1. 목적

2. 기본방향

II.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조치사항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3. 돌봄 종사자

4.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_대응절차 지침상, 신고 대상 등의 기준 변경 시, 관련내용 반영예정

1 목 적

- 본 지침은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장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임.

2 기본 방향

- 사업장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결근 노동자의 동향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등 전염병 증상을 나타내는 **소속 노동자**(하도급, 파견, 용역노동자 포함)의 **발생 동향**을 **철저히 파악**한다.
- 사업장의 경영자는 소속노동자(하도급, 파견, 용역노동자 포함)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격리대상자 포함)**가 발생하면 즉시 적절한 격리가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 포함) 등 보건업무 담당자는 본 지침 내용을 소속 노동자(하도급, 파견, 용역노동자 포함)에게 철저히 교육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에 대비하여, 사업장 차원에서 **경영유지 및 업무 지속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를 지정하고 **대비·대응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사내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가.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 개인위생 관리를 강화한다.

- 손씻기와 관련하여 개수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손 세척제(비누 등) 또는 손 소독제, 일회용 수건이나 화장지 등 위생 관련 물품을 충분히 비치하여 노동자들의 개인위생 실천을 유도한다.
- 기침 예절을 준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안내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요령(붙임 1)

-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 호흡기증상으로 의료기관 방문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시 마스크 착용
- 눈·코·입 만지지 않기
- 중국 여행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 신고

- 보호구 및 위생관련 물품*의 부족 또는 공급혼선에 대비하여 사전에 물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한다.

* 마스크(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와 접촉 우려가 있는 경우 KF94, KF99, N95 등 마스크, 그 외의 경우 보건용 마스크 등), 비누, 손세정제, 핸드타월, 화장지, 소독용 세제, 체온계 등

○ 노동자 및 고객(방문객)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실천방안을 홍보한다.

- 사업장 내 전파 방지를 위해 노동자 및 고객(방문객) 대상으로 기본적인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씻기, 기침 에티켓 등)을 홍보한다.
- 사업장, 영업소 등의 샤워실·세면대 등에 홍보 안내문이나 포스터 등을 부착한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자료 등을 활용

붙임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

* 질병관리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해당 부처·기관·사업장 등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 지침

2020. 2.



질병관리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Q54. 중국 의료진이 확진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의료인은 안전할 수 있는가요?

- 의료진은 항상 감염병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높은 수준의 감염 관리가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음압실과 보호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충분히 훈련된 의료진이 있습니다.
* 개인보호구(레벨D 세트, N95 호흡보호구, 일반마스크 등)를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최상의 감염방지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 아울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전담 감염관리팀에서 병원 내 감염예방 및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감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Q55. 중국 보건당국과 정보교류의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약(IHR)에 따라 지정된 각 국가 공식 연락담당관(National Focal Point)을 통해 중국과 정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 이 외에 한-중 질병관리본부 간 소통채널과 현지공관의 채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 내 청결을 유지한다.
 -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개수대 등 사업장 내 청결·소독을 유지한다.
 - 소독을 담당하는 노동자는 청소나 소독 시 반드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환경부에서 허가 받은 소독제 제품별 사용 용도 및 용법·용량을 준수하여 소독을 시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 집단 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를 따른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소독 안내” 검색]
 - 컵·접시·스푼 등 공동사용 금지,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 실시
- 사업장이 운영하는 기숙사 등의 주변 가구와 방을 청결히 하고, 침구류, 수건류를 분리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통근버스를 자주 소독하는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버스 안에서 기본적인 기침 예절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동자를 교육한다.

나.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권고한다.
- 해외 출장 및 여행 등을 다녀오는 노동자에 대한 출장·여행 전후 관리를 강화한다.
 - 출장·여행을 계획 중인 노동자는 “개인위생수칙 준수 및 다중 밀집장소 방문 등 유의사항 준수, 해외에서 주의사항, 귀국 후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교육한다.
* 중국의 경우 여행경보제도에 의해 후베이성은 3단계(철수권고: 긴급용무 아닌 한 철수·여행취소), 후베이성 제외 중국지역은 2단계(여행자제: 신변 안전 특별유의·여행 신중검토)의 여행경보 발령(’20.1.28 기준)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발생하고 있는 싱가포르,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여행 삼가(’20.2.10 기준)

※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를 참고하세요.(’20.02.10 기준)

- 해외에서 입국 하는 노동자는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 상태질문서에 사실 그대로 기술하고, 검역관에게 설명토록 한다.
-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노동자는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때 해외여행력을 반드시 알리도록 한다.
- 특히,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하여 복귀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의 접촉이나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예방 및 감염확산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급적 휴가, 재택 근무 또는 휴업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 특히, 전염 확산 가능성이 큰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자체 발열 모니터링 등을 통해 확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 **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쇼핑센터(대형마트·시장·면세점·백화점 등), 영화관 등
- 의료기관*, 항공사, 대형마트 및 운수업 등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업종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점검,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 청소, 세탁, 돌봄서비스종사자(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청원경찰 등 병원협력업체 포함
- 사업주는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가 감염 예방을 위하여 손소독* 및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위생용품을 비치한다.
- * 의료기관 등에서 환자를 대하거나 가검물 등을 취급하는 경우 외에,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의 경우 오염된 장갑을 즉시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병원체 전파 우려가 있어 장갑 착용보다는 손씻기 및 손세정제(알코올 세정제)를 활용하여 개인 위생관리 실시

Q51.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긴급위원회를 개최하여 질병 특성을 규정하고, 현재 상황과 위험도 평가,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등이 발표됩니다.
-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정으로 각국은 권고사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Q52. 위기평가회의에서 위기정보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상향조정하게 된 근거와 내용

- 확진환자가 추가로 발생한 상황과 세계적인 확산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해외에서 유입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 추가 유입 및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위기평가회의를 통하여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기존의 질병관리본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은 지속하되,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관련 예산 확보 등 범정부적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Q53. 외국인 등이 입국 시 증상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요?

-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시 다국어(중국어, 영어)로 작성된 행동수칙 홍보물을 제공함으로써 증상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및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를 통해 내원한 환자에 대해 해외여행력 정보(중국 방문력, 접촉자 등)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50. 가정에서 소독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과 눈을 만지지 않는다.
2. 소독제를 준비한다.*
* 제조업체의 지침 준수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예, 가정용 락스)
3.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
4.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
5.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6.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와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한다.
7.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사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폐기 처분하거나 소독, 음성이면 사용가능
8.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 봉투에 넣는다.
9.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0.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1. 장갑과 마스크를 전용봉투에 넣는다.
12.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13. 청소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14. 소독한 장소를 환기 시킨다.

다. 사업장 내 의사환자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

- 사업장에서 의사환자 발견 시 증상 유무 확인 및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하도록 한다.

◆ 의사환자

-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 이때 해당 노동자와 접촉한 노동자가 있다면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 등이 이뤄질 때까지 이동하지 말고 사업장 내 격리장소*에서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장갑 등)를 착용하고 보건소 담당자를 기다린다.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 지시사항에 따라 수행

** 보건소 담당자 도착 전, 의심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 착용

- 의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장갑 등)를 착용 후 알콜, 락스 등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소독하도록 한다.
-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 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노동자 또는 접촉자에 대해서는 출근하지 않고 유선으로 관리자에게 보고 후 보건당국 안내에 따라 병원 또는 자가 격리토록 조치한다.

- 사업장에서 확진 환자*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 된 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한 고객 등이 확진 환자로 확인된 경우를 말함.

** 사업장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노동자 포함

- 사업주는 확진환자에 대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반의 심층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 소독 등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조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는 적극 협조한다.
- 확진 환자가 머물렀던 장소*와 시간 등 이동 동선이 명확히 분리되는 시공간에서 근무한 노동자에 대한 능동감시는 보건소의 조치에 따른다.

* 작업장, 휴게실, 식당, 고객·방문자 등이 방문한 장소 등 사업장 내 모든 장소를 말함.

라.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대응계획 수립

- 사업장 차원에서 대응·대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한다.
- 유행 확산 시 사업장의 주요 분야의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주요 인력·기술 등 현황을 파악한 후 비상시에 대비한 '업무 지속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점검한다.
- 동 계획 수립 시 사내에 함께 근무하는 협력업체·파견·용역업체 노동자를 포함한다.
- 확진자 발생 또는 의사환자 발생에 따른 결근을 대비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 대규모 결근 사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노동자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노동자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 본인감염, 환자간호, 휴교로 인한 자녀돌봄 등의 사유 등이 가능

Q48. 의료기관에서 소독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소독제로 차아염소산나트륨(1000ppm 권장), 70% 알코올(국소 표면인 경우) 등이 포함되며, 살균력이 입증된 바이러스용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희석배율, 접촉시간, 취급 주의사항 등의 권장사항을 따릅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 방법>

- 희석배율 : 0.1% (1,000ppm) 기준 (5% 락스를 1:50 으로 희석)
- 희석방법(1mL 희석액 기준) : 물 1,000mL, 5% 락스 20mL
- 접촉시간: 구멍이 없는 표면은 10분 이상, 물품 침적 시 30분 침적
- 소독이 끝나면 오염의 정도를 고려해 최소 2시간 이상 환기(시간당 6회 이상 환기)를 합니다.

Q49. 확진환자가 다녀갔던 장소의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에 의거하여 보건소에서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하여(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 확진환자가 다녀간 장소(의료기관, 식당 등)에 대해서는 바이러스가 사멸하도록 충분히 소독하므로, 소독 후에는 안심하고 이용 가능합니다.

<기타>

Q45.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예방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6. 중국을 경유하는 전체 국제선의 승무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나요?

- 현재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해외여행객과 장시간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드리나, 해당 항공사의 감염예방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Q47. 기부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보건복지부 산하에서는 재난과 긴급구호를 포함한 각종 기부금품의 모금·배분을 위한 전문 기관으로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운영 중입니다.
-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응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각종 기부물품의 접수와 배분도 수행 중에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담당 연락처를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기부 절차를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인사업2팀 02-6262-3154

- 결근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재편성 계획을 수립*한다.

* 대체근무조 편성, 대체근무지 지정, 근무시간 조정, 재택근무 등

- 감염자에 대한 보수·휴가 규정 및 회복 후 업무 복귀 절차를 마련한다.

4 추가 안내 사항

가. 휴가 및 휴업 관리

-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입원·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음.

구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지원수준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13만원 상한)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 (4인 가구 123만원)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20.2.17부터 신청을 받고 예비비 등 예산 편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조속히 지급할 예정	

-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니라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지도한다.

* (휴가) ①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른 유급병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등 부여, ②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등 권고

** (휴업)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필요(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미발생)

나.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주기 유예

- 다음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국가 감염병 위기 정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유예한다.

* '20. 1. 27. 기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3단계(경계)임

- “폐기능 검사” 등 검사 중 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의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일체

* 폐기능 검사(폐활량검사,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비특이기도 과민검사), 객담세포검사

- 건강진단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노동자

- 특수건강진단관련 의료종사자가 노동자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 및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염을 예방하도록 한다.

<치료>

Q42.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확진받게 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Q43. 확실한 치료제가 없다던데,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 치료제가 없다는 것은, 특정한 병원균, 즉 신종코로나바이러스나 병든 세포를 찾아서 치료하도록 만들어진 표적치료제(targeted therapy)가 없다는 뜻이며, 치료가 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현재, 확진환자 중 2명은 치료가 잘 되어 퇴원하였습니다.

Q44.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백신이 있나요?

-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은 없습니다.

◆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상사업장은 질병관리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 지침”을 참고 (붙임5)

Q41.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환경에 얼마나 살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에서 떨어지면 사멸(죽어 없어짐)합니다.
- 일반적인 바이러스는 침 같은 분비물에서 최대 2시간 동안 생존했다가 사멸합니다.
- 침대, 테이블, 문고리 등 무생물체 및 환경에서는 수일동안 살 수 있으나, 환경에 있는 바이러스가 증상을 발현시킬 수 있는지는 밝혀진 바 없습니다.
- 현재 침대, 테이블, 문고리 등 환경을 통한 전파 사례도 보고된 바 없습니다.

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보건당국의 조치사항

*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 (5판) 에서 발췌

※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을 개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할 예정

1. 환자 및 의사환자 관리

①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 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진단 검사
- (조치사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이송 및 입원 치료

② 의사환자: 자가격리* 실시 및 검사

* 최종 노출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부록1)」,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부록2)」을 준수하여 자가모니터링 실시

※ 단, 폐렴 등 중증인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이송 가능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방문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확진 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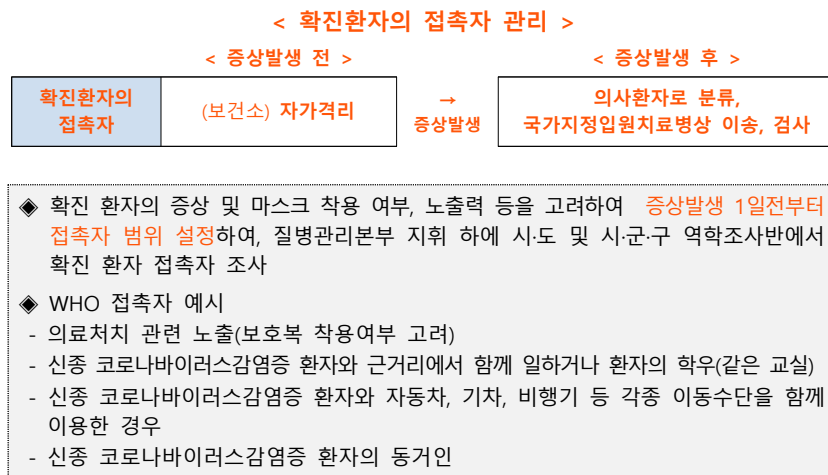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③ 의사환자가 아닐 경우

- 최초로 인지 한 보건소가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등 보건교육 실시
 - 호흡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손씻기 강조, 기침 예절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중국 방문력 알리기
 - 증상 악화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우선 문의

2. 접촉자 관리

① 확진환자와의 접촉자 관리



-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 **(자가격리)** 의학적 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면 자가격리를 원칙,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 발부
 - ※ 자가 격리 시 독립된 공간 확보가 어렵거나 추가적인 보조 등이 필요한 경우 접촉자 격리시설 또는 병원격리 실시
 - **(능동감시)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및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Q40. (2.7일 기준) 현재까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 (병원체)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 novel Coronavirus)
- (감염원) 동물로 추정하고 조사중
- (전파경로) 동물 -> 사람 -> 사람 전파 추정
 - 사람간 전파는 비말(호흡기 분비물) 전파 추정
 - 가족간, 의료기관 내 2차감염 확인
- (전염력) $R_0=1.4\sim2.5$ (사스(SARS)의 경우 3, 메르스의 경우 지역사회 0.6, 원내전파 4)
- (잠복기) 불확실
 - * 일반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에 준해 2~14일 추정
- (임상증상)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폐렴
- (위중도) 폐렴 보고사례 중 25% 정도가 중증/위중 환자* 고위험군은 고연령, 기저질환자
- (치명률) 약 2.1%* 전체 2.1%, 후베이성 내 3.1%, 우한시 내 4.9%, 후베이성 외 0.16%
 - * 치명률은 환자 발생 지역의 의료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스의 치명률은 0~50%이상으로 추정하는데,
- 전반적인 치명률은 약 11%로 추정됩니다. 메르스의 치명률은 2015년 대한민국의 유행 결과 20.4%였습니다.

Q38.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 바이러스와 SARS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을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박쥐유래사스 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39.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어떻게 전염되나요?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경로는 비말(침방울) 및 호흡기 분비물(콧물, 가래 등)과의 접촉입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공기 중으로 날아간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전염이 됩니다.

② 의사환자와의 접촉자 관리

< 의사환자의 접촉자 관리 >



- 의사환자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자 조사
- 접촉자 중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 의료기관에서 진료

3. 격리해제 조치

① 격리해제 기준

- (의사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음성일 경우
- (확진환자)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호흡기 검체* PCR 검사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 * 검체 종류는 임상상태에 따라 결정

② 격리해제 확인

-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격리해제
- 의사환자 격리해제 시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잠복기 동안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귀가조치
 - * 14일내 증상 악화 시 1339 또는 보건소 문의 안내

③ 접촉자 모니터링 해제

-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지속 후 해제
 - * (예시) 최종접촉일(2.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16일 해제
 - * **확진환자 접촉자가 확진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기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는 지속**



질병관리본부
KCDC

2020.2.4.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주요 증상

✔ 발열(37.5℃ 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폐렴

<감염병 문의>

Q36. 무증상에서도 전파되나요?

- 대부분의 호흡기감염질환은 증상이 없는 초기일 때는 전파 위험이 적습니다.
- 그 이유는 사람과 사람 간에 전염시킬 정도로 균이나 바이러스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신종 감염병으로 아직까지 어느 수준에서 바이러스가 전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확립되지 않았으나,
 - 기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달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무증상, 경증환자 전파 가능성이 있음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이에 과학적, 의학적으로 제기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선제적으로 과감한 방역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Q37. 확진자도 폐렴은 없는데, 본 질병의 공식 용어는 무엇인가요?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질병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명명법도 2019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입니다.

Q35. 자가격리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대응지침 5판 < 부록 1 >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 홈 > 대상별 맞춤정보 > 자가격리자 메뉴 바로가기

부록2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2020.2.4.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주요 증상

- 발열(37.5°C 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폐렴

□ 감염예방법

<참고> 「감염병예방법」 상 유급휴가 지원 규정

△ 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3조의2(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참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13만원 적용
- ② 생활지원비 금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 준용

Q32. 접촉자가 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 확진환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및 능동 감시를 합니다.
- 의학적 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면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나, 독립된 공간 확보가 어렵거나 추가적인 보조 등이 필요한 경우 접촉자 격리시설 또는 병원격리를 하게 됩니다.
-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보건소에서 능동감시를 하는데,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 합니다.

Q33. 자가격리를 하면 생활지원을 해 주나요?

-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34.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 지원합니다.
-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합니다.

Q29. 환자가 확진되면 항공기 내 같이 탄 접촉자(승객) 조사는 어떻게 되나요?

- 환자가 확진되면 동승항공기의 근접접촉자 및 공항 내 접촉자는 좌석번호 및 공항 CCTV 등을 확인하여 중앙역학조사관이 접촉자를 분류, 확인하게 됩니다.
- 거주지 소재 시·도로 명단을 통보하여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Q30. 외국인인데, 자가격리 중이지만 증상도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출국할 수 있나요?

-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증상과 관련없이 격리 기간동안 외부 활동 및 출국 등을 할 수 없습니다.

Q31.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 될 경우 어떻게 격리하나요?

-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되거나 추가적인 보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 내에서 적절한 자가격리 장소에 시설 또는 병원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붙임1

감염병 예방 수칙

1. 유의사항

□ 생활속 예방수칙

- ▶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손가락, 손톱 밑 등
- ▶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하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기 말기
- ▶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 손씻기
- ▶ 기침, 재채기 시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기

□ 의료기관 이용시 준수사항

-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
- ▶ 가벼운 질병은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 이용하며 중증 환자 외 대형의료기관 이용을 자제
- ▶ 비응급 상황에서는 응급실 내원을 자제
- ▶ 의료기관 내원 시, 의료진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고 안내에 잘 따를 것

□ 병문안 등 의료기관 방문시 준수사항

- ▶ 되도록 병문안 자제, 특히 노약자의 경우에는 병문안을 삼가도록
- ▶ 병문안할 때 마스크 착용, 철저한 손위생 등 개인위생에 만전을 기할 것
- ▶ 병문안 후, 보건요원 등의 문의와 조사가 있을 경우, 이에 정직하게 응하기

2.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접촉자>

Q27.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확진환자의 접촉자 조사를 위하여 증상발생 1일 전부터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은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 정보 등은 개인정보로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접촉자는 개별적으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여 방역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28.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는가?

- 접촉자는 항공기, 공항, 의료기관, 일상생활 등에서 환자와 접촉한 인원을 대상으로 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증상 발생 1일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항공기 내 접촉자 범위 기준은 탑승한 환자 중심 전후 3열의 승객을 접촉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해당열 포함 총 7열).

<검역 관련>

Q23. 항만에서의 검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항만에서의 검역 또한 항공기 입국시 검역(Q2.)과 동일 합니다.

Q24. 현재 중국에서 입국 시 검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현재 중국 전역으로 오염지역을 확대하여 발열감시와 건강상태 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별검역을 통해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하고, 내국인은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시 국내거주자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국인 및 외국인은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국내거주자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하게 됩니다.

Q25. 중국 외 지역에서 입국 시 검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입국장에서 발열감시카메라를 통한 발열감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입국 시 증상이 있을 경우 자진신고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26. 중국은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 중인가 ?

- 중국 전체로 오염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검역관리 수행 중입니다. ('20.1.28.)

붙임2

카드 뉴스



2020.01.21



해외여행 후 발열과 기침 때문에 걱정하셨나요?
그럴 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연락하세요.

질병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감염병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모든 감염병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3/8

2020.01.21



**주요 감염병 상담부터
질병관리본부 업무 민원 상담까지!**



감염병 관련하여 궁금한게 많은데
다 질문해도 되나요?

Q) 어떤 것을 안내 받을 수 있나요?

- 주요 감염병(메르스 등)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상담·조치사항 안내
- 해외여행 입·출국자에 대한 감염병 정보, 필수 예방접종, 예방법 등 안내
- 법정 감염병 정보 및 예방법, 발생 신고 기준 및 절차 등 안내
- 질병관리본부 업무에 관련된 민원 상담 및 담당자 연결

4/8

Q20.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사람 간 전염이 되나요?

- 중국 내 가족 간 감염 사례, 의료진 감염 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우한시 내에서는 3~4차 감염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Q21. 화난 해산물 시장 외 다른 감염원의 가능성이 제기되는가?

- 초기와는 달리 현재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력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들이 보고되고 있어 다른 감염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22. 마스크는 어떤 것을 써야 하나요?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의심환자 진료 또는 이송 시 보건의료인(의료진, 이송요원 등)에 대해서는 KF94(N95)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에서는 일반인의 경우 KF80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사용 효과가 있다고 하며, 필터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없을 경우에는 기침이나 침방울이 바로 접촉,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한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마스크 사용 시 예방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자주 교환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본인이 기침을 한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원 및 전파 관련>

Q17. 손소독제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 손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하여 손 씻기를 권고합니다.
- 다만, 손을 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손소독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18. 중국 초기 보도내용은 제한된 사람 간 감염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이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떠한 판단인가요?

- 현재까지 발생상황은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유행이 지속되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으로, 가족간 전파 및 병원내 의료진 집단감염 발생이 보고되는 등 사람간 전파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Q19.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어떻게 전염되나요?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전파경로는 비말(침방울) 및 호흡기 분비물(콧물, 가래 등)과의 접촉입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공기 중으로 날아간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전염이 됩니다.

2020.01.21

질병관리본부
KCDC

**365일 24시간 국내-해외
모두 상담 가능한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Q) 업무시간은요...? 외국에서도 상담 가능한가요?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하며,
상담원 연결이 지연될 경우
상담 가능한 번호 알려주시면 추후 연락 드립니다.
해외에서는 +82-2-2663-1339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8

2020.01.21

질병관리본부
KCDC

**If you are a foreigner even, don't worry.
Please call at 1339 Call center!**

Q) 외국인도 이용 가능할까요?

1339 콜센터와 상담을 원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와 3자 통화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1345 상담 가능 시간(20개국어)
09:00~22:00 한국어 중국어 영어 | 09:00~18:00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외 17개 언어

6/8

2020.01.21 질병관리본부 KCDC

전화가 어렵다면, 카톡으로 상담받으세요!

카카오톡채널에서
KCDC 질병관리본부
채널 추가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질병·건강정보도 받고
언제 어디서나 1:1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지난 주 중국 우한시에 다녀 온 후
기침이 계속 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일까요?

안녕하세요!
질병관리본부(KCDC) 1339 콜센터입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
유선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연락처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7/8

2020.01.21 질병관리본부 KCDC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는
설 연휴에도 감염병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염병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질병정보 궁금할 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8/8

Q14. 의사환자로 검사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검사 시행 초기에는 검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의료기관에서는 관할 보건소에 의사환자로 신고하여 환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심한 호흡기 증상 등 의료진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원격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Q15. 민간 의료기관에서 받는 검사는 무료인가요?

- 의사환자에 해당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이 경우 검체 검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Q16. 중국을 방문한 후에 증상은 없지만 검사를 할 수 있나요?

-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감염병에는 잠복기가 있어 이후에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Q12. 검사 기관은 충분한가요?

- 약 50여개 기관이 검사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검사 기관 확대 지정을 위하여 의료계와 지속 협의 중으로, 현재보다 검사기관이 더 늘 수 있습니다

Q13.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병관리본부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가 사례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환자들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 정의>

☐ 확진 환자(Confirmed case)

- ①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진단검사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 의사환자(Suspected case)

-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② 확진 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③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배제할 수 없는 자

붙임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포스터

질병관리본부

KCDC

해외감염병 NOW

133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손바닥, 손톱 밑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

선별진료소*(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지역번호+120, 1339 문의

감염병이 의심될 땐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

중국 여행 시 주의사항

동물 접촉 금지

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 자제

발열, 호흡기증상자(기침, 인후통 등) 접촉 금지

·기침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중국 여행 후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귀국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

* 감염병 발생 정보 확인 : [해외감염병 NOW](#) 에서!

발행일 : 2020.1.29

- 23 -

<여행 관련>

Q1. 동남아 여행을 예약했는데, 여행을 가도 되나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동남아 등 26개국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2.6. 기준) 되고 있으므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서 공지하는 여행경보단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다음과 같은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NOW’에서 발생 정보 및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해주세요.
- (방문 중)
 - 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기침, 인후통 등)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 (방문 후)
 -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24시간 상담가능) 또는 보건소로 먼저 상담해 주세요
 - 또한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실 경우는 지역 내 선별진료소를 우선으로 방문하시고,
 - 진료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Q9. 의료기관 어디든 가면 검사가 가능한가요?

-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이용하셔야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선별진료소는 안전하게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환경과 검사의뢰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의심 증상 시 선별진료소 이용하시면 검사에 편리합니다.
- 선별진료소는 직접검사 또는 수탁검사를 통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 검사시간은 6시간이나 검체이송 시간과 사전 검사의뢰 대기시간이 발생하면 검사 후 1~2일 내외에서 결과가 통보될 수 있습니다.

Q10. 검사시약은 충분한가요?

- 현재 긴급사용승인된 시약 3,750명분이 비축되어 배포되었으며, 일일 1,250명분 검사가 가능합니다.
- 현재 긴급사용승인 추가 허가를 위한 성능 평가중이며, 관련학회, 기업과 협력하여 빠른 시간내 생산량을 늘이도록 추진 중입니다.

Q11. 검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6시간 내외입니다.
- 그러나 검체 이송, 준비 등의 시간이 소요되며, 검사를 기다리는 대기 검체가 많은 경우 이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회신까지 1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검사 관련>

Q7. 의사환자 조치는 무엇인가요??

- 역학조사를 통해 의사환자로 분류된 분들은 환자의 임상 상태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습니다.

Q8. 검체 채취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검체 채취
 - 검체 채취는 전문 의료인이 개인보호구를 갖추고 검체채취 지정장소 (선별진료소 등)에서 시행합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위하여 2개 검체를 채취하며 검체 채취 시 불편감·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 하기도 (가래를 배출하여 통에 담음)
 - 2. 상기도 (비인두) 비강 깊숙이 면봉삽입하여 분비물 채취 (구인두) 면봉으로 목구멍 도찰하여 검체채취
- 채취 방법
 1. 하기도: 가래(Sputum) 멸균용기(가래통 등)에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침을 유도하여 채취
 2. 상기도: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
 - *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을 동시에 채취하여 하나의 VTM 배지에 담아 수송 비인두도말물(Nasopharyngeal swab): 콧구멍을 지나 하비갑개 중하부(구인두)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 구인두도말물(Oropharyngeal swab): 혀를 누르고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 눈·코·입 만지지 않기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 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Q2. 중국에서 발생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원인, 증상은 무엇인가요?

- 원인병원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으며, 증상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폐렴 등)이 주로 나타납니다.
- 참고로 현재 정확한 치명률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Q3.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을 다녀온 후 주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중 어느 하나라도 있는 경우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고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반드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증상이 발생한 경우 타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손씻기 등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Q4. 중국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유행하고 있는데 중국 여행을 가도 되나요?

- 대한민국정부는 최근 여행정보 단계를 조정하여 중국 후베이성은 여행정보 3단계(철수권고, 1.25일 기준), 전 중국지역*은 여행정보 2단계(여행자제, 1.28일 기준)를 발령하였습니다.

※ 홍콩·마카오 포함, 대만 제외

- WHO에서는 중국을 여행 제한구역으로 권고하고 있지는 않으나, 중국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 NOW'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다음과 같은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 눈·코·입 만지지 않기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 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Q5.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을 다녀온 후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중 어느 하나라도 나타나면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Q6. 중국 여행 시 감염예방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 인가요?

-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NOW'에서 발생 정보 및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해주세요.
- (방문 중)
 - 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기침, 인후통 등)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 (방문 후)
 -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24시간 상담가능) 또는 보건소로 먼저 상담해 주세요